

개인정보보호 규정

2009. 12. 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제와 기타 계약상의 요구에 대응하고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며 비인가자에 의한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본교 구성원과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①본교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교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설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특정 조직에 소유권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

개인정보보호 규정

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②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③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④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5 조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본교의 모든 구성원, 외주용역직원 및 제3자는 부주의·의도적 부적절한 노출·손실·오용으로부터 본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으며, 주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구성원, 외주용역직원 및 제3자는 인가된 정보자산만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불법사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다.
2. 본교 구성원이 본교의 정보자산 사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자산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교 구성원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사용권한 이외의 활동을 위해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4. 본교 구성원은 허가된 목적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단지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소유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조직

제 6 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①본교는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2. 본교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3. 본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본교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본교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본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7 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본교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1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유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및 보유기관의 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 8 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본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본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본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 10 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①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본교가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 3. 보유기관의 명칭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도의 범위 및 그 사유 등

②제1항의 규정은 본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개인정보파일의 조사) ①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각 부서는 누락되는 개

개인정보보호 규정

인정보파일이 없도록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이 누락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진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방침) ①본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본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성명·소속 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①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본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일반인이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실 및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사무실에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①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본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파일의 복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④위탁 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본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①본교는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본교는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제6항에 의해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⑤보유기관의 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5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⑧보유기관의 장은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본교의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 또는 본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의 고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정보자산에 접근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제 20 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보유기관의 장에게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여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21 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보호 규정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22 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2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정정·삭제청구서를 제출하여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삭제거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리청구) ①정보주체는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제 24 조 (수수료 등) 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본교가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삭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한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게 된 사유가 본교에 있는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실태조사) ①본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교의 각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현황 및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매체·주전산기·입출력장치·전산실 등의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3.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실태와 이용·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4.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개선에 필요한 자료

③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본교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 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침해사실을 신고한 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27 조 (의견제시 및 권고) ①본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및 권고는 권고사항, 권고사유 및 관계기관의 회신기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 조 (벌칙) ①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교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본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본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본교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본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2009. 12. 16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